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2024년 3월 1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

CHUBB®



주요가입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해당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매출액 및 정보주체 수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차등 적용

정보주체 수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0억원 미만
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제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2억원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1억원	5천만원	
1만명 미만	면제				

• 매출액 산정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법인(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기준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산정 (단,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정보주체 수 산정 방법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의 일일평균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정보주체 수의 총합/92(일) (단, 직전년도 3개월 간 일일평균 정보주체 수 산정(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방문자 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온·오프라인 정보주체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총칭합니다.

• 확장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피보험자의 컨설턴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및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명예훼손을 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위기관리실행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해당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용

- 변호사 상담비용
-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 전화회선의 증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 위로금·위문품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 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특약 가입 시 보장)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 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객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중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Property & Casualty Division
E FinLines.KR@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화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 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 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항).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납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 (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민없이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